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숭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15 발의연월일: 2021. 7. 21.

발 의 자:김승남 · 윤재갑 · 정일영

송재호 · 최종윤 · 민병덕

이형석 • 김원이 • 이용빈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을 부류 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지방도매시장과는 달리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위법·일탈 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면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3% 미만인 품목이거나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매시장 개설 자가 상장예외품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지정절차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상장예외품목이 계속하여 확대되는 등 상장 경매원칙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하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원인이 개설자에 전적으로 맡겨져 운영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 나.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도매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와 현대화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함(안 제78조제3항제7호 신설).

- 다.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78조제4항 신설).
- 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이 위법·일 탈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 단서).

법률 제 호

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지정한다"를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한다"로 한다.

제7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구성·운영"을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자격"으로 한다.

- 7. 도매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와 현대화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의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	
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	
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의하여 <u>지정한다</u> . 이 경우 5년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	<u>한다</u>
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
치) ①・② (생 략)	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③
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도매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
	와 현대화에 관한 사항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u><신 설></u>	④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 개설
	자 소속의 위원회는 농림축산

- ④ 위원회의 <u>구성·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생 저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한다.

- 1. ~ 26. (생략)
- ③ ~ ⑦ (생 략)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u>⑤</u> <u>구성·운영 및 위</u>	
원의 자격	
세82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ठ</u> ो	
며,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	
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26.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